

주의: 본 질의응답서는 법률 구조협회 (The Legal Aid Society)에서 작성한 것으로,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 세금 및/또는 정부 보조금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본 지에 포함된 정보의 작성일자는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1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개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21년 3월 11일에 서명한 연방 법안으로, 그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법안에는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Recovery Rebates)를 통한 개인별 세금 환급
- 실업 보험 급여 혜택 확대
- 연방 세제 혜택 일부 변경

참고: 경기 부양 지원금 (EIP, Economic Impact Payment)은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RRC, Recovery Rebate Credit)의 선금 형태로 지급된다. 따라서, 2020 소득 신고 시 경기부양 지원금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개요

미국 구조 계획안을 통해 시행되며, COVID19 팬데믹 대응책으로 연방 정부가 내놓은 3차 경기 부양책이다. 총 소득이 개인의 경우 80,000 달러 이하, 부부 합산의 경우 160,000 달러 이하, 세대주의 경우 120,000 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에게 지급된다. 액수는 2020년 과세연도 내 조정 후 총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아직 2020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2019년 세금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수령액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과 부양가족 각각에게 1,400 달러를 지급한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수령 자격 요건

작년에 시행된 경제보장법 (Stimulus Payments under the CARES Act, 2020년 3월에 시행된 1차 경기부양 지원금) 및 통합세출법안(2021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0년 12월에 시행된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 지원금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현행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 (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보유한 성인이어야 하며, 취업 대상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만 보유한 경우는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배우자가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소득 신고 대상 과세연도 내 배우자가 미군 소속이었던 경우라면 자격을 갖는다.

만일 자녀가 사회보장번호 혹은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 (ATIN, Adop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사회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당 자녀도 지급대상이 된다.

만일 사회보장번호는 가지고 있으나 가족 구성원들의 체류자격이 각기 다른 경우, 해당 가족 중 사회보장 번호 혹은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를 가진 구성원만 지급 대상이 된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만 있거나 그 외에 다른 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엔 리커버리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고, 리커버리 리베이트 대상 과세연도 내 상대 배우자가 미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만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자격을 갖는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수령 전 구비요건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자동으로 지급된다.

- 2020 년 세금 신고를 마친 경우
- 2019 년 세금 신고를 마친 경우
- 2020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20 년 11 월 22 일 이전에 세금보고 비대상자용 창구(Non-Filers tool)를 이용한 경우
- 퇴직금, 장애 및 유족 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연금 수령 대상자인 경우
-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령 대상자인 경우
- 철도퇴직급여 수령 대상자인 경우
- 재향 군인이거나 VA 보상금 또는 연금 (C&P) 수령 대상자인 경우

참고: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신고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리커버리 리베이트 대상자가 된다. 국세청이 처리한 간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자동적으로 지급을 받는다.

### 신청방법

위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무소득 혹은 저소득자로 2019 년 세금 신고를 한 바 없으며, 2020 년 11 월 22 일 전 국세청 홈페이지(IRS.gov) 의 세금신고 비대상자용 창구(Non-Filers tool)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자동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2020 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고 세금 신고서 라인 30(line30)에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신청하면 된다.

### 자녀가 있는 경우

2020 년 세금 신고서상 피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인당 1,400 달러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2020 년 세금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19 년

신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자녀는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보장번호 혹은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단, 지급금은 부모가 수령한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본인의 세금 신고를 바탕으로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2021 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2021 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녀에 대한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노인 피부양자를 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자가 된다. 단, 지급금은 부양자 본인이 수령한다.

### **2020 년 소득을 기준으로 최근 지급대상 자격을 갖추었으나, 2020 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0 년 세금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고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 하면 된다. 단순히 올해 지급액뿐만 아니라 작년 2 회분의 지급 대상자일 수도 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 및 2020 년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2020 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년을 기준으로 한다.) 총 소득 75,000 달러 이하의 무자녀 가구 및 총소득 112,500 달러 이하의 세대주, 각자 자격요건을 갖춘 총 소득 150,000 달러 이하의 부부에 한하여 1,400 달러가 전액 지급된다. 단, 총 소득이 증가해 1 인 기준 80,000 달러, 세대주 기준 120,000 달러 및 부부 합산 기준 160,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령 가능한 리커버리 리베이트 금액은 줄어든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수령 일자**

직접 입금 형태의 지급은 이미 진행 중이다. 기존 일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1 년 3 월 22 일부터 수표가 발송될 예정이며, 2021 년 3 월 29 일부터 경기부양 지원금 카드가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Get My Payment tool' 을 통해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2020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20 년 3 월 (1 차 경기부양 지원금) 혹은 2020 년 12 월 (2 차 경기부양 지원금)부터 리커버리 리베이트 대상자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2020 년 세금 신고 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세금 신고서 1040 또는 1040-SR 의 라인 30 에 작성하면 된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수령했으나, 자녀 몫의 추가 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자녀 몫의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2021년에 2020년 기준 세금신고를 하면 추가로 1,4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했으나 배우자 중 한 명만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개인납세자 식별 번호만 있는 경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한 배우자만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상대방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외:** 배우자가 사회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소득 신고 대상 과세연도 내 배우자가 미군 소속이었던 경우에 한해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만 보유한 사람도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급 대상자가 된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회수 여부**

회수 대상이 될 수 없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일종의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하는 의무는 없다. 정당하게 수령한 경우라면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공제도 아니고 대출도 아닌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다.

### **체류상 불이익 발생 또는 공적 부조 (Public Charge)대상자 취급 여부**

관계없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체류 허가 심사와 관련한 공적 부조와 무관하다. 정당하게 수령한 경우라면, 체류 허가 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수령한 경우 기타 정부 보조금 감소 및 수령 자격 상실**

관계 없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통한 세금 환급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공적 부조,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최저 생계비 지원금, 섹션 8(Section 8) 및 NYCHA 등 정부 보조금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 생계비 지원금의 경우, 12개월간 지원 대상자의 자산 한도 2,000달러 (개인 기준) 혹은 3,000달러 (부부 기준) 까지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공적 부조의 경우, 지급 당월 이후 2개월간 자산 한도 2,000달러 (60세 이상의 경우 3000달러) 까지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징수 대상 여부**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징수 대상이 아니며, 연방 혹은 주정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단, 사채로 인한 차압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 **리커버리 리베이트 수령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지급을 받게 된 경우**

소득 한도기준을 초과하여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급 대상자가 아니나, 의도치 않게 지급을 받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반납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의 경우에도 동일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체류 자격 미달로 인해 지급 대상자가 되지 못했으나 우연히 지급을 받게 된 경우라면 국세청에 반납하여 향후 체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작년에 지급된 리커버리 리베이트의 경우, 초기에 국세청은 교도소 수감자는 수령자격이 없음을 명시하며 수감자 중 지급을 받은 자가 있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반납할 것을 요청했다. 이 후 이에 관한 법적 소송이 불거지면서 반납의무는 사라졌다. 2020년 3월 27일 이후 수감되어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수감자 중 지난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리커버리 리베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망자 또는 자산 신탁기금은 여전히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 리베이트가 지급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반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실업보험 급여 기간 연장

실업보험 (UI, Unemployment Insurance) 급여 기간이 25주 추가 연장되고, 주당 300불씩 추가로 지급된다. 팬데믹 실업보조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를 통해 초 단기 근로자(Gig economy workers) 및 자영업자 등 기존에는 수급 자격이 없던 근로자 에게도 실업보험 급여를 확대 지급한다.

팬데믹 긴급 실업 지원(PEUC,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의 경우 2021년 3월 14일자로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최대 79주로 연장될 예정이다. 3월 14일을 기준으로 26주간의 표준 기간 이후에도 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들도 수급 가능 최대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6일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연방 기금도 지원금 대기기간을 포기한 주 들에게까지 확대 지급된다. 소득이 5,000달러 이하인 자영업자의 경우 매주 100달러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실업보험 기본급이 줄어든 것을 감안한 혼합 소득자 실업보상 (the Mixed Earner Unemployment Compensation)의 일환이다.

모든 실업급여가 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총 소득 150,000달러 이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초기 지원금 10,200달러의 경우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2020년 기준에만 적용된다.

### 자녀 세액공제 및 근로 소득공제

2020년 과세연도의 자녀 세액공제 (CTC, Child Tax Credit) 및 근로 소득공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또는 EIC, Earned Income Credit)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다. 각각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팬데믹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자격요건이 충분했을 법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2020년에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법안은 2019년 소득을 바탕으로 자녀 세액공제 및 근로 소득공제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혜택 한도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한 자녀당 2,000 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3,000 달러로 늘어났으며, 5 세 이하 자녀의 경우 최대 3,600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 자녀의 연령 역시 16 세에서 17 세로 확대되었다.

공제액 중 일부는 2021 년 세금에 선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선택사항이다. 법적으로 공제액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즉, 세금 계산서 상 금액이 0 까지 줄어든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 환급의 형태로 공제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액 중 절반은 향후 6 개월간 지급되며, 2020 년 세금 신고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아직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년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 지급 빈도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자 가정의 13 세 이하의 자녀 또는 기타 피부양가족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2020 년 과세연도 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기존에는 2 인 이상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최대 2,100 달러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했으나, 올해만 유일하게 확대 적용하여 1 인 피부양자 기준 최대 4,000 달러, 2 인 이상의 경우 최대 8,000 달러까지 지급한다.

혜택 감소 소득 한도도 기존보다 높아졌다. 기존에는 조정 후 총소득이 15,000 달러 이상인 경우 세제혜택이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그 한도를 125,000 달러까지 높였다.

마지막으로, 3 차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통한 세제 혜택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금 계산서상 금액이 0 이라 하더라도 환급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